

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도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22일
경기도지사

1. 적용지역 및 대상 :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2. 적용기간 : 2020년 12월 23일 00시 ~ 2021년 1월 3일 24시

3. 처분내용

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집합금지

<사적모임 집합금지 대상>

- (사적 모임) 친목형성을 주된 혹은 부차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동일 장소(실내·외 불문), 동일 시간대 다수가 모이는 경우
- (대상 예시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워크숍, 계모임, 집들이, 송년회, 돌잔치, 직장회식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, 친목 형성 목적의 수련회, 기타 유사한 성격의 모임 일체

<적용 예외>

- 행정·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(친목형성이 목적이 아닌 업무상 불가피한 모임)
-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 내 50인 미만 허용
- 결혼식 및 장례식 <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적용(50인 미만 인원제한)>
- 기타 일상적 가정생활(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 활동) 등

② 4인 이하 사적모임 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

[4인 이하 사적모임 방역수칙]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방역 수칙	이용자 방역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위한 동반입장, 예약 제한 안내 ■ 4인 이하 입장 후 5인 이상 합석 행위 등 제한 안내 ■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 이용 시 일시적 합석 행위 등 금지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
본 공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수본 거리두기 지침을 준용함

4. 처분사유 :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코로나-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개인 간 감염 위험이 높은 사적모임 등에 대하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보다 강화된 경기도 자체 방역대책을 시행

5. 처분근거

근거법률	적용대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■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제2의2호 ■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3항 (시행일 : 2020.12.30.) ■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제7호 ■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3조제2항 및 제4항 	<p><집합금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집합금지 <p><방역수칙준수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4인 이하 사적모임 시 방역수칙 준수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12. 23.(수) 부터

7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및 제 83조에 따라 고발(300만 원 이하의 벌금) 조치 또는 과태료(관리자·운영자 300만 원 이하, 이용자 10만 원 이하)가 부과될 수 있고,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또한 2020년 12월 30일 이후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,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0. 문의처 : 경기도청 및 시·군·구 시설(장소) 소관부서

11. 처분 담당부서 : 경기도청 질병정책과 끝.